

간 호 업 무 상 과 실

고려병원 간호과장 이 송 희

1. 간호업무상 과실의 법적 의의

간호업무상의 과실은 간호원이 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 의무를 대만하여 그 때문에 법에 위배되는 사실이 발생(또는 발생의 가능성)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 못하는 것을 말 합니다.

즉, 간호 행위가 도리어 환자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사망, 또는 상해의 나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 합니다.

1) 부주의(Negligence)와 부정행위(Malpractice)와의 법적 의의.

간호업무상의 과실은 주의 의무의 태만 즉 부주의(Negligence) 때문에 발생 한다고 하였는데 부주의와 부정행위(Malpractice)는 어떠한 법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합니다.

부주의라는 용어는 의무에 준하여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동일하거나, 혹은 근사한 상황에서 하여야 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할일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행위 또는 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또는 그 소유물에 손상을 주는 가장 가까운 이유가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주의(Negligence)란 용어는 어떠한 활동에서도 부적당하고 잘못된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를 포함하는 말이지만, 부정 행위(Malpractice)라는 용어는 고도화된 기술적 서비스를 하는 특수한 전문직을 수행하는 직업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의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부주의한 행위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부정 행위라는 단어는 전문적이라는 단어와 같이 정확한 한계를 지을 수가 없고, 그 행위의 최소한의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는 기술이나 훈련에 의한 것이던, 어떠한 직업인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가 부주의 한 행위로 생각되기도 쉽습니다. 부주의는 모든 부주의한 행동을 의미하지만 부정 행위는 다만 전문적인 행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주의 한 행위를 말할 때에 한하여서 사용됩니다.

부정 행위란, 다만, 제한이 있는 전문 용어이며 부주의란 모든 부주의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 행위와 부주의란 분리된 불법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이며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주의한 행동의 구성요소는 부정 행위의 구성에도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주의에 적용되는 법의 원칙이 부정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부주의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정 행위는 전문적인 행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주의한 행위를 말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하에 말씀드리는 부주의는 곧 간호 행위상의 부정행위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즉, 부주의는 주의 의무의 위반이며, 주의 의무의 내용에는 결과 발생의 예견(豫見) 의무와 결과 발생의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발생의 예견 의무는 법에 위배되는 사실이 발생(또는 발생의 가능성)할 것을 행위 이전에 알아야 할 의무이며 결과 발생의 방지 의무는 그와 같은 인식, 예견에 입각하여 법에 위배되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

의 의무입니다.

소위 인식이 없는 과실, 즉 알지못하여 저지른 과실은 법에 위배되는 결과 발생의 예견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인식이 있는 과실 즉, 알고 저지른 과실은 행위자가 일단 결과 발생의 예견 의무는 다 하였으나, 법에위배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3) 간호업무상의 주의 의무

간호원의 간호 업무상의 주의 의무는 사람의 생명, 건강을 직접 위협한다는 간호의 본질에서 오는 것이며 사회 일반이 주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정당한 간호 행위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원들은 간호 행위 수행에 있어서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최선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간호원의 주의 의무는 양식(良識)을 구비한 보통 일반 간호원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무는 가능한 한도내의 의무이며 불가능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의무 위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객관적 주의 의무는 일반적 주의 능력을 한도로 하며 일반적 주의 능력을 넘은 경우에는 주의 의무의 위반은 없으며, 우발적, 불가항력적 사실로서 위법성이 조각(阻却)됩니다.

보통 일반 간호원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간호원으로서의 보통 사람(평균인, 표준인)을 표준으로 한 주의 능력이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모든 간호원에게 전연 동일한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의무는 병원, 진료소 등 진료의 장소가 있는 지역, 설비 또는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서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산간 벽지의 보건소에서 간호업무와 대 도시의 큰 병원에서의 간호 업무는 다르며, 환자 상태의 긴급의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서도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장소에 따라서, 그때 그때의 구체적 사정 상에서의 간호원의 평균적 표준인으로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간호원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은 간호원의 주도적 의무인 “간호”에 있어서나 “진료의 보조”에 있어서도, 그리고 일시적인 “입시 응급의 처치”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4) 인과관계(因果關係)

불법 행위는 가해자가 범한 위법성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서로 대비시켜 인과관계가 있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것은 시간적 전후의 관계가 있는 사실의 사이에 존재하는 필연적 관계를 말합니다. 일정한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의 사실이 있으면 타의 일정한 사실이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간호원의 업무 행위에 과실이 있고, 환자가 사상(상해)을 받아도, 그 과실이 있는 행위와 사상(상해)과의 사이에 원인결과의 관계가 없으면, 간호원의 책임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주의에는 기소할 수 있는 부주의와 기소할 수 없는 부주의가 있습니다.

기소할 수 있는 부주의란 피고가 하여야 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의무” 아래서 어느 행위를 생략했거나, 부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그 생략이나 부가는 다만, 그 상해에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상해의 직접적 이유가 되거나 그 상해를 초래하는 가장 가까운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해 없는 부주의는 사실상 부주의이기는 하나 기소할 수 있는 부주의는 아닙니다.

2. 간호 업무상 과실과 그 방지책

둘째로 간호 업무상 과실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원인과 그 방지책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합니다.

1) Medical order의 정확한 실시

간호 업무상 파실에는 투약에 관한 파실이 많은데 투약에 관한 파실의 원인으로서는 투약을 하는 간호원이 투약 시행상 파실을 한 경우와 투약에 관한 order를 정확하게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투약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간호원은 order를 받을 때부터 주의 의무를 시작해야 하며 그 시행에 있어서 주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즉, order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를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order는 파실을 방지하고 동시에 의사나 간호원과 병원을 보호하게 됩니다. order는 의사가 기록하되 일자와 서명이 있어야 하고 명확하고 알기 쉬운 필적으로 되었을 때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의사가 뜻하는 바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information을 order를 통해 주어야 합니다.

즉, 투약지시에 있어서는 약명과 1회의 분량, 1일의 투여 회수, 또는 투약 시간, 투약 방법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만일, 누락된 내용이 있는 incomplete order가 나온 경우에 간호원은 누락된 점을 명시해 줄 것을 의사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 간호원의 전문적 지식이나 판단으로 order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즉, 연령에 비해 투약의 분량이 부적당 하거나 order에 나온

처치가 현재 환자의 실정에 부적당 하다고 고려될 때에는 간호원은 행위 이전에 의사에게 문의하여 재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 의무의 이행을 위한 간호원의 이같은 재 확인에 대하여 의사도 이를 받아들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간호원의 문의 혹은 경우에 따라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행위의 결과가 환자의 생명에 손상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행위를 거부하는 일이 오히려 주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

고 있는 행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도움을 받아 일을 은당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대한 간호원의 임무에 대하여 국제 간호도덕 법규 제 7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간호원은 의사의 지시를 증명하고 성실하게 실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비윤리적 일에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2)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의 범위의 규정화.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의 범위는 법령의 형식적 기준에 한하지 않고 업무의 실질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습관상 조리상 요구되는 일체의 주의해야 될 의무를 말한다 고 하였으며 또 특수한 면허 행위를 위한 자격자가 그 행위를 하다가 파실을 범하였을 때에는 업무상 파실 이라고 하여 일반인의 파실 보다 중하게 처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전문 교육을 받은 자라면 그만한 것은 알고서 일을 했어야 하므로 “몰라서 못했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간호원들이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혹은 기관에 따라서 구체적 사정이 다르고 또 파실의 상당수가 무지의 소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간호원들이 하여야 할 직무의 내용, 책임의 범위나 한계가 문서로서 규정되어야 하며 각각의 직무의 구체적인 시술 절차도 문서로서 규정화 하여 간호 방법 지침서 (Nursing procedure manual)로서 나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무 기술서의 간호 방법 지침서의 내용은 새로운 직원을 위한 orientation이나 직원들을 위한 inservice training을 통해 충분히 instruction이 되어야 하며 직원들은 안전한 시술 절차로 정확히 수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또, 알고 있는 지식도 경험을 쌓지 못하고 숙련이 안되어 있는 경우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일이 많고 적당한 판단이 지연되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파실을 범하는 수도 허다 하므로 직업적 기술의 연다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적은 사람은 실패,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크기 때문 입니다.

3) 증상과 징후의 세밀한 관찰과보고

증상과 징후의 세밀한 관찰과 보고는 간호원의 의무이며 진료중에 일어날 수 있는 과오를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의 세밀한 관찰과 기록이 중요 합니다. 진료상의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라도 증상과 징후의 세밀한 관찰로서 이를 조속히 발견하여 빠른 조치로서 상해를 최소한으로 경감하고 생명을 구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4) 응급 환자의 진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상 과실은 Emergency case에 빈번히 발생 합니다.

의사의 부재시에 환자의 상태가 위급할 때에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의 지시 없이 절대로 필요한 응급 처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간호원의 주의 의무입니다. 국제 간호도덕법규 제6조에 “간호원은 그 책무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긴급시에 한하여서만 의사의 명령 없이 치료와 권고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의사의 지시 없이 치료를 하는 것은 부정 행위에 속하나, 의사가 부재한 경우에 환자의 생명에 위급한 것을 보고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아서 그 결과 예견치 않았던 손상이 있으면, 이것 또한 간호원의 주의 의무의 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급시에 한하여, 의사의 order를 받을 수 없을 때 간호원은 올바르게도 신속한 판단에 의해 응급처치를 하되, 간호원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능력을 인식하고 주의깊은 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조속한 시간 내에 의사에게 보고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응급 환자에 대비하여 어떤 병원에서는 간호원이 시행하는 Suction의 사용, 산소공급 등을 할 수 있도록 Standing-Emergency order가 제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5) Medical team 및 Nursing team의 책임 분계

Medical team member 간의 직무의 한계는 명확히 규정화 되어야 합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각기 자기 의무를 책임지고 완전히 수행하므로써 업무상 과실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여 필요한 주의 의무가 누락되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부가되는 경우가 있어 그 결과, 업무상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진료와 간호는 24시간 계속되는 것이므로 Nursing team의 member들도 교대시간마다 책임의 인수 인계를 정확히 함으로써 투약의 중복이나 누락등 업무상 과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과실에 관한 보고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같은 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실에 관한 사실적 경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과실을 저지른 당사자 및 감독자로부터 과실 발생의 원인, 과실 발생후의 조치, 예방책 등을 기록한 소견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같은 보고서는 사건 발생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교육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책임자들은 과실에 관한 보고를 자세히 연구 분석함으로써 간호방법이나 규정의 실제성, 유효성 혹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건 처리후,

과실과 관련이 있는 Medical team의 모든 member들은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과실이 재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3. 간호 업무상 과실의 책임

업무상 과실은 전문 직업인들의 예리한 양심, 직업적 연명이나 외부적 압력에 관계없는 양심에 의해 상당히 제저, 방지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전문적 행위는 강한 개인적 책임감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업무상 과실에는 당연히 법적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나 그 문제를 떠나서도 과실을 저지른 당사자는 마땅히 도의적 책임을 저야 하며 또 기관에서도 과오를 범한 사람에게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책임을 부가 하므로서 본인이나 타 동료들이 주의 의무를 잘 이해하도록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과오의 대소를 막론하고 그 원인과 책임이 구명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나중에는 더 큰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만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4. 과실과 사고의 발생면에서 본 간호 업무의 특질과 병원 행정당국의 책임

간호직은 과실과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정도가 다른 어떤 여성 직업 보다도 심합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항상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점은 의료요원 전체가 당면하는 문제이나 간호직은 병원내에서의 환자와의 접촉시간이 가장 길고 타 직종에 비해서 인원수의 비율이 높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호행위의 종류와 그 빈수는 병원내의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가장 많습니다.

그 일체를 든다면 투약에 있어서 의사는 처방과 order를 내고 약사는 조제를 하는 데 그치지 만, 간호원은 투약실시에 있어서 order된 회수와 시간에 따라서 1회의 분량을 준비하여 투약하고 기록하고 그 효과를 관찰하고 기록 보고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현재 우리의 실정으로는 병원에서 간호원의 법적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

한 만큼의 간호원수가 부족하여 주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사고의 발생이 불가항력인 때도 있고 최저의 비품이나 기구 재료가 없어서 의무를 알고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간호원은 “전문적인 어머니”라고 불리 워지는데 그 이름 그대로 보통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의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이 시급하고도 명백한 환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전혀 이질적인 일을 하여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간호원의 업무량은 격증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잡한 병원 사회의 인간 관계속에서 계속 되는 육체적 피로, 정신적 긴장, 반복되는 야간근무, 인간 관계가 미치는 심리적 부담 등은 작작과 망각을 가져오고 업무상 과실은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병원이 환자를 입원시키고 그 환자의 치료를 위한 책임을 수락한다는 것은 충분한 치료를 베푼다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을 막론하고 병원은 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환자를 정당하게 치료하고 간호해 주기 위한 시설과 요원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과실의 발생을 예견하는 병원 행정 당국의 주의 의무이며, 또한 위법인 사실의 발생을 방지하는 결과 방지의 주의 의무라고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 병원 행정 당국의 책임 수행, 주의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료과오”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 5회 한국 케토릭 병원협회 세미나에서의 강연 원고임>